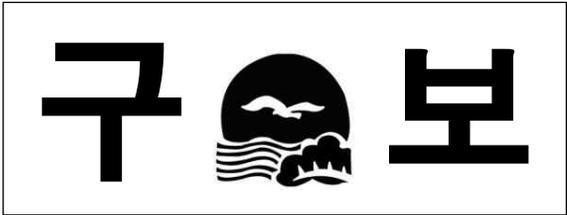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352 호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340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341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11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343호 (지방의회 제출안건 공고) 24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348호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 주민의견수렴 공고) 25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340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 정 이 유

자원봉사활동화 운영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센터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센터의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자원봉사센터장 선임방법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현행)임기 2년 → (개정)임기 3년

□ 의 견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8일 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총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교류협력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교류협력팀)
- ▷ 전 화 : 032)760-7182 [FAX 032)760-7159]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8.

제 출 자: 총무과장

1. 제 안 이 유

자원봉사활성화 운영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센터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센터의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자원봉사센터장 선임방법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현행)임기 2년 → (개정)임기 3년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23. 8.

라. 기 타

-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하부기관으로 도서지역에 영종용유 분소를 둔다.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센터의 조직·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행정상, 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기념행사
-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신청 및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 2.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센터장의 임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임된 센터장의 임기는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341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개 정 이 유

- 가. 現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를 반영하여 체계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근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나. 最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봉사자에게 예우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가. 現자원봉사 조직에 맞게 정비
 - (현행) 명예회장, 회장직 삭제
- 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 운영위원회 위촉직 자격 정비(안 제2조)
(구의회의원 삭제 :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 겸직 제한 규정 반영)
 -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해촉 기준 및 근거 마련(안 제5조)
 - 운영위원회 기능 추가 및 정비(안 제6조)
- 다.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라. 자원봉사자 등의 우대조항 신설(안 제19조)

□ 의 견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8일 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총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교류협력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교류협력팀)
- ▷ 전 화 : 032)760-7182 [FAX 032)760-7159]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8.

제 출 자: 총무과장

1. 제 안 이 유

- 가. 現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를 반영하여 체계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근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나.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봉사자에게 예우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가. 現자원봉사 조직에 맞게 정비
 - (현행) 명예회장, 회장직 삭제
- 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 운영위원회 위촉직 자격 정비(안 제2조)
(구의회의원 삭제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검직 제한 규정 반영)
 -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해촉 기준 및 근거 마련(안 제5조)
 - 운영위원회 기능 추가 및 정비(안 제6조)
- 다.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라. 자원봉사자 등의 우대조항 신설(안 제19조)

3.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3. 8. ~
- 라. 기 타
 -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 대표
3. 자원봉사운영 사회단체장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활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과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센터장이 되며, 서기는 센터 직원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운영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갖추 두어야 하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재원) 센터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회계관리) ① 센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는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센터장은 당해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된 보조금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확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1부.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의사록(사본) 1부.
4. 사업실적보고서 1부.

제13조(직원의 정원)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 팀원 5명 등 8명으로 한다.

제14조(직원의 채용 등) ① 직원은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최초임용일 현재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을 경우 위원회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승진임용)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의 결원 발생 시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된 직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16조(징계) ① 센터장은 직원이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보수지급) ①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그 밖의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센터의 운영규정) 조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센터의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예우)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자원봉사센터의 추천을 통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칭호를 부여하고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제21조(실비보상) 조례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준용) 센터의 재산, 물품,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회장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수 등 일반적인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원의 보수, 정년, 공인 등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직원 자격기준(제14조제3항 관련)

직 책	자 격 기 준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팀 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소지하고 자원봉사 관련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팀원 (직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소지하고 자원봉사 관련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별표 2]

직원 보수지급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지급시기 : 공무원 급여 지급일과 동일

○ 지급방법 : 호봉제 적용

○ 지급기준

- 센터 장 :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 팀 장 : 일반직공무원 7~8급 상당
- 팀 원 : 일반직공무원 8~9급 상당

○ 기타사항

- 보수는 공무원 해당 직급의 봉급과 수당, 실비보상 등으로 한다.
다만, 일부 수당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직원채용 시 초임 호봉의 경우 1호봉을 부여하고, 만 1년이 경과한 후 승급한다.

[별표 3]

자원봉사활동 시간별 칭호부여(제20조 관련)

자 원 봉 사 활 동 시 간	자 원 봉 사 칭 호
500시간 이상	동 장
1,000시간 이상	은 장
1,500시간 이상	금 장
2,000시간 이상	봉사왕

[별표 4]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급기준(제21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통비 : 5,000원 이내 ○ 급식비 : 8,000원 이내 ○ 활동용품비 : 실 구입가격

※ 실비보상은 지급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343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출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2023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348호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 주민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5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지역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24.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1.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 2023. 8. 24. ~ 2023. 9. 7. (15일간)
- 2. 공고내용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14개 구간)
 ※ 세부내용은 [별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조서 참조
- 3. 공보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4.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가. 관계서류 :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 조서/도면(별첨자료 확인)
 [별첨1] 조서 및 도면 1부
 [별첨2] 의견수렴서식 1부
 - 나. 열람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제2청 도시행정과 직접방문 열람가능
 중구청 홈페이지 열람 (<http://www.icjg.go.kr>)
- 5. 의견 제출방법 : 중구제2청 도시행정과 방문·우편·팩스 접수
 - 가. 방문 및 우편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2층 도시행정과
 - 다. 문의전화(팩스) : ☎032-760-7764 (FAX : 032-760-6991)

6.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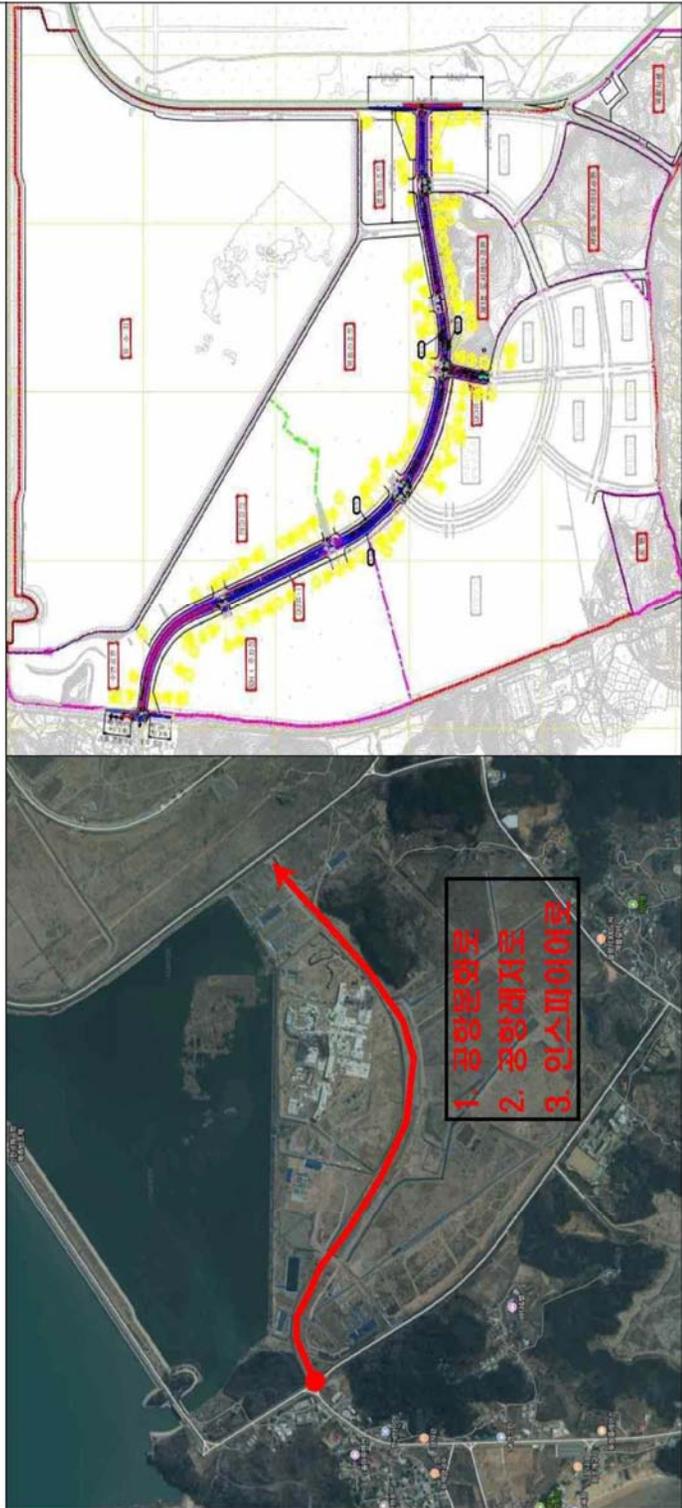


[붙임 1]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조서

1.

구분	도로구분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합행정구역
		시점	종점	시작	끝							
1안	로	공항문화로	윤서동 2955-9	윤서동 2955-9	윤서동 2955-9	2,500	36	20	1	250	인천국제공항 인근 위치한 지역으로 각종문화 및 레저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 인스파이어북합리조트의 의미를 반영한 도로명	윤서동
2안	로	공항테저로	윤서동 2955-9	윤서동 2955-9	윤서동 2955-9	2,500	36	20	1	250	인천국제공항 인근 위치한 지역으로 각종문화 및 레저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 인스파이어북합리조트의 의미를 반영한 도로명	윤서동
3안	로	인스파이어로	인스파이어로	인스파이어로	인스파이어로						인스파이어북합리조트로 진입하는 도로임을 반영	윤서동

현황도면



2, 3, 4, 5. 영종상로, 드림로, 아일랜드로, 한상해안로

구분	도로구분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 행정구역
			시점	종점				시작	끝		
신규	로	영종한상로	중산동 1849	중산동 2018	3,600	22	20	1	360	영종도와 한상드림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영종동
신규	로	드림로	중산동 2023	중산동 1865-5	2,700	28	20	1	270	한상드림아일랜드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의 의미를 반영한 도로명	영종동
신규	로	아일랜드로	중산동 2028	중산동 2021	968	28	20	1	98	한상드림아일랜드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의 의미를 반영한 도	영종동
신규	로	한상해안로	중산동 2029	중산동 2031	643	16	20	1	66	한상드림아일랜드 내 해안경관을 조망하는 도로임을 반영	영종동

현 황 도 면



6. 방죽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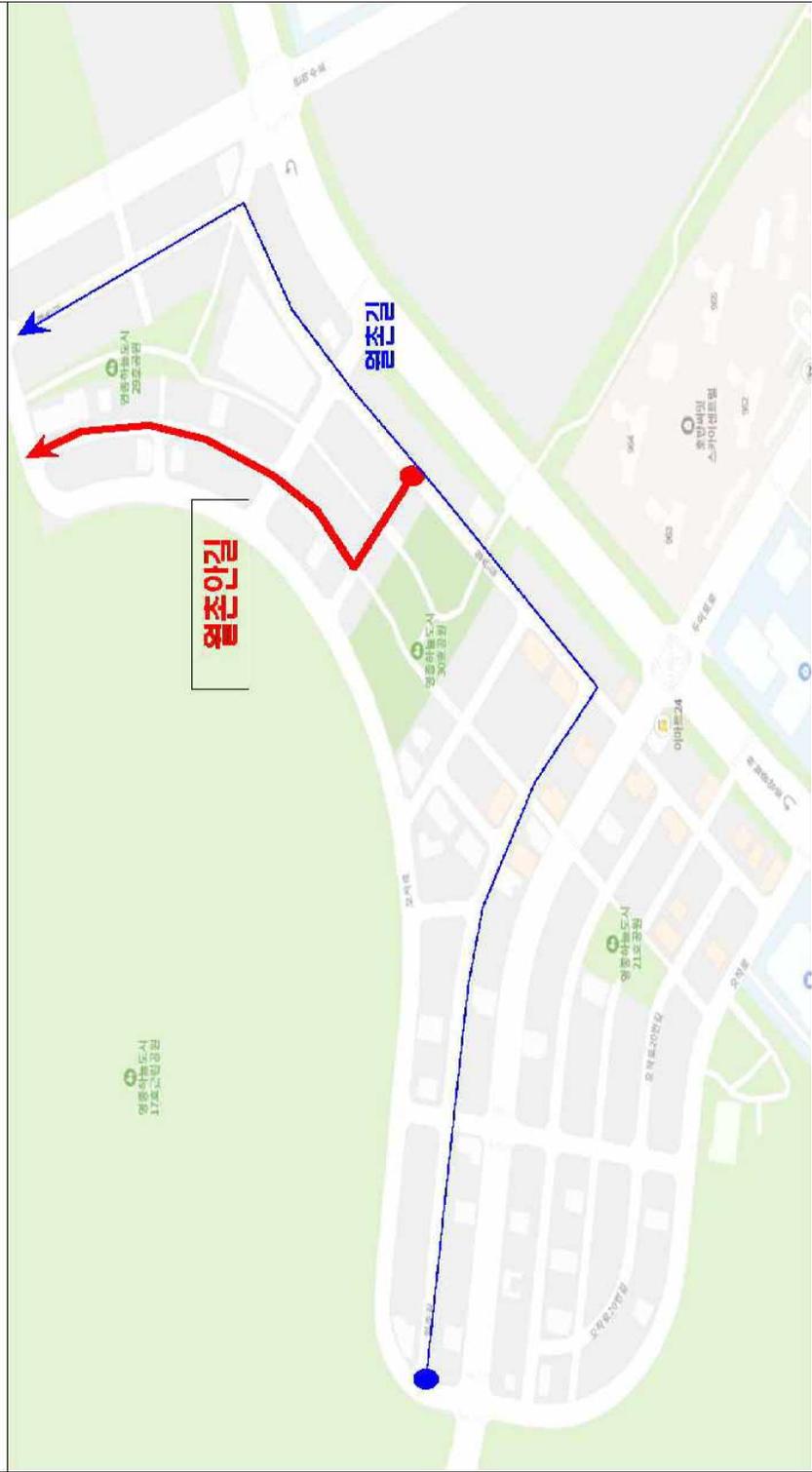
구분	도로구분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활용장구역
			시점	종점				시작	끝		
신규	길	방죽안길	중산동 1742-2	중산동 1125-79	1,634	6	20	1	164	안방죽과 큰방죽 인근에 위치한 자연지명(방죽안)을 반영	영종동



7. 월촌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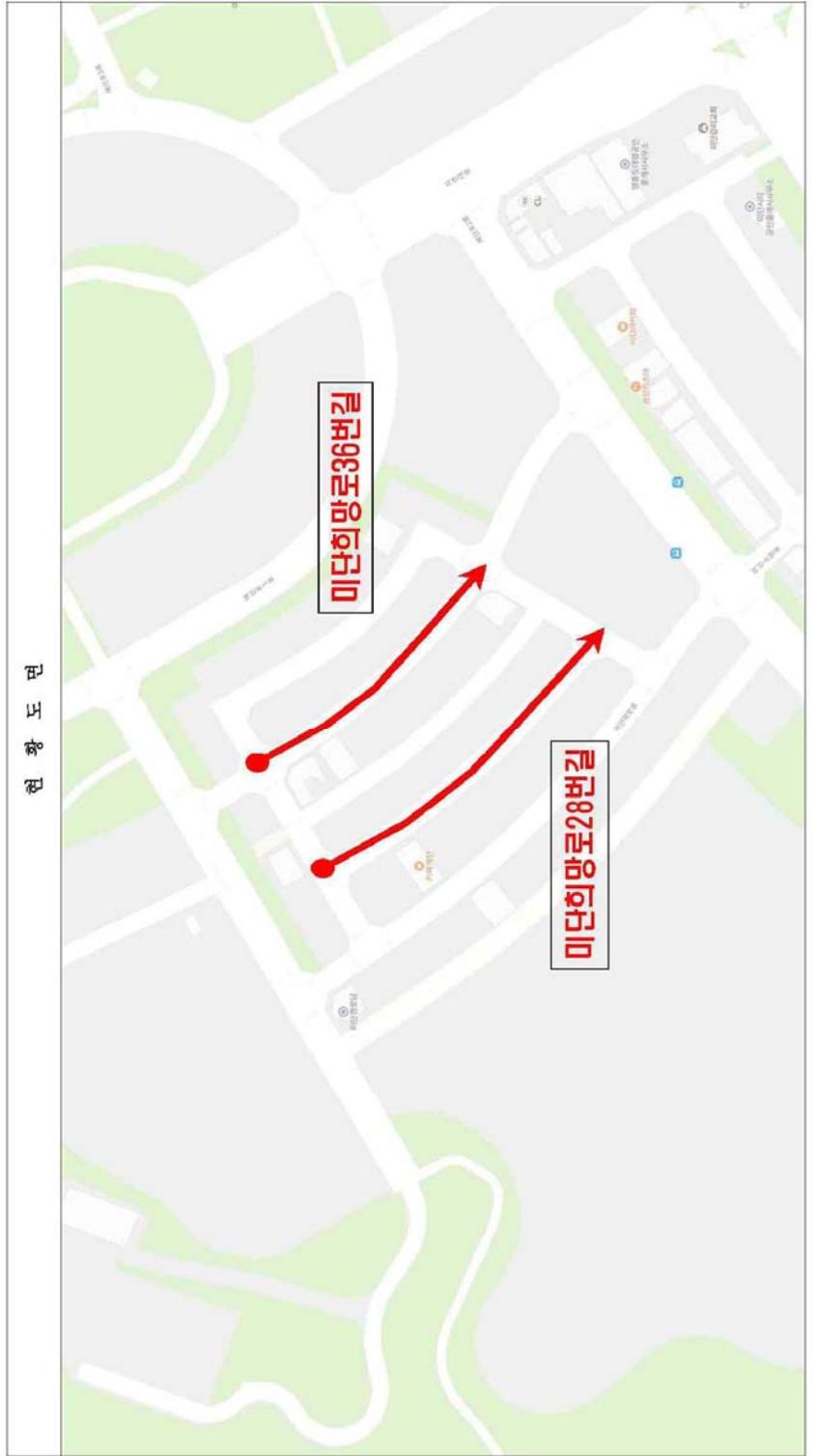
구분	도로구분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활용정구역
		시점	종점				시작	끝		
신규	길	중산동 1911-7	중산동 1909-26	250	6	20	1	26	월촌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영종1동

현 황 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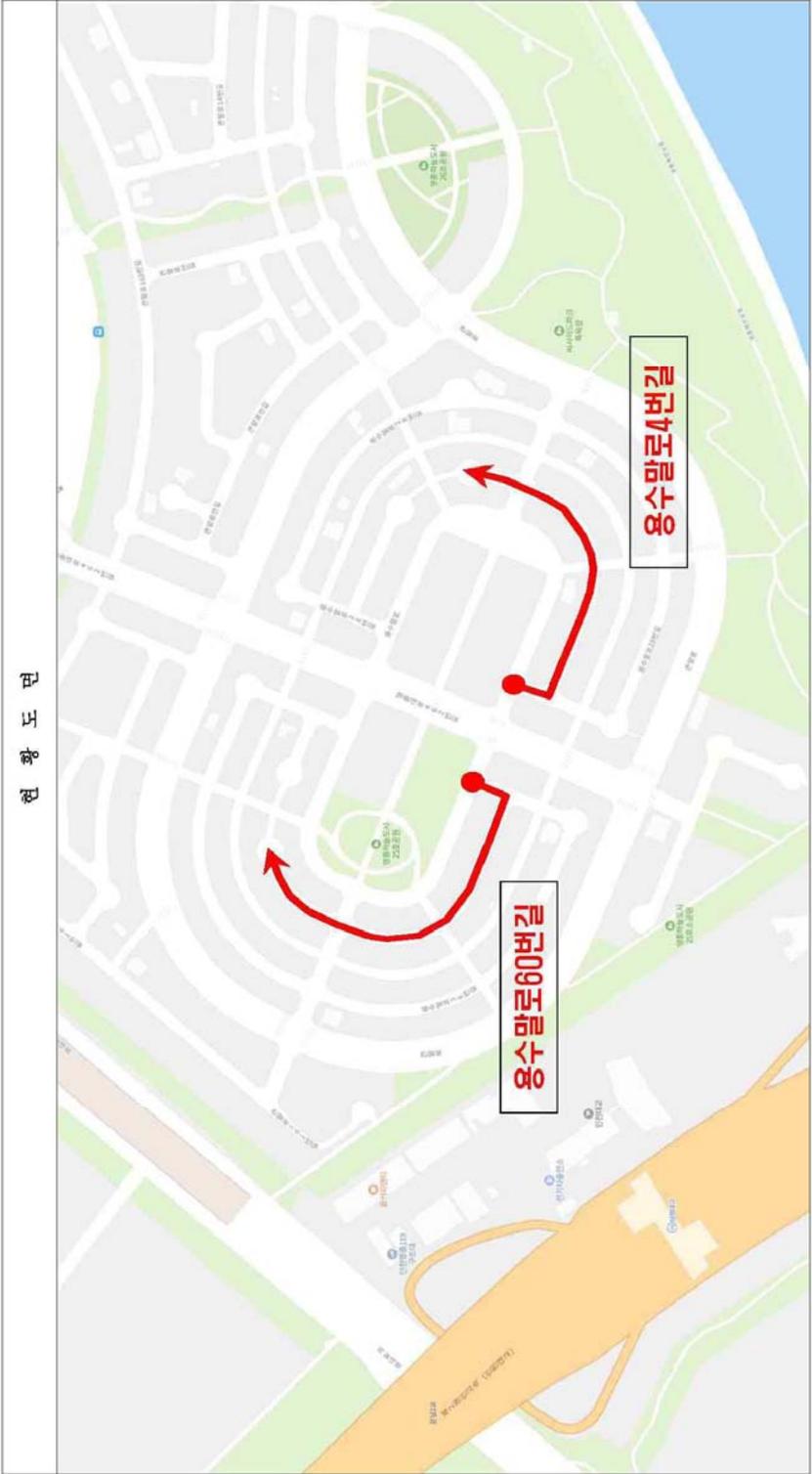
8.9. 미단희망로28번길, 미단희망로36번길

구분	도로구분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현황
			시점	종점				시작	끝		
신규	길	미단희망로 28번길	운북동 1356-13	운북동 1356-13	166	6	20	1	18	미단희망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영종동
신규	길	미단희망로 36번길	운북동 1358-7	운북동 1358-7	138	6	20	1	14	미단희망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5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영종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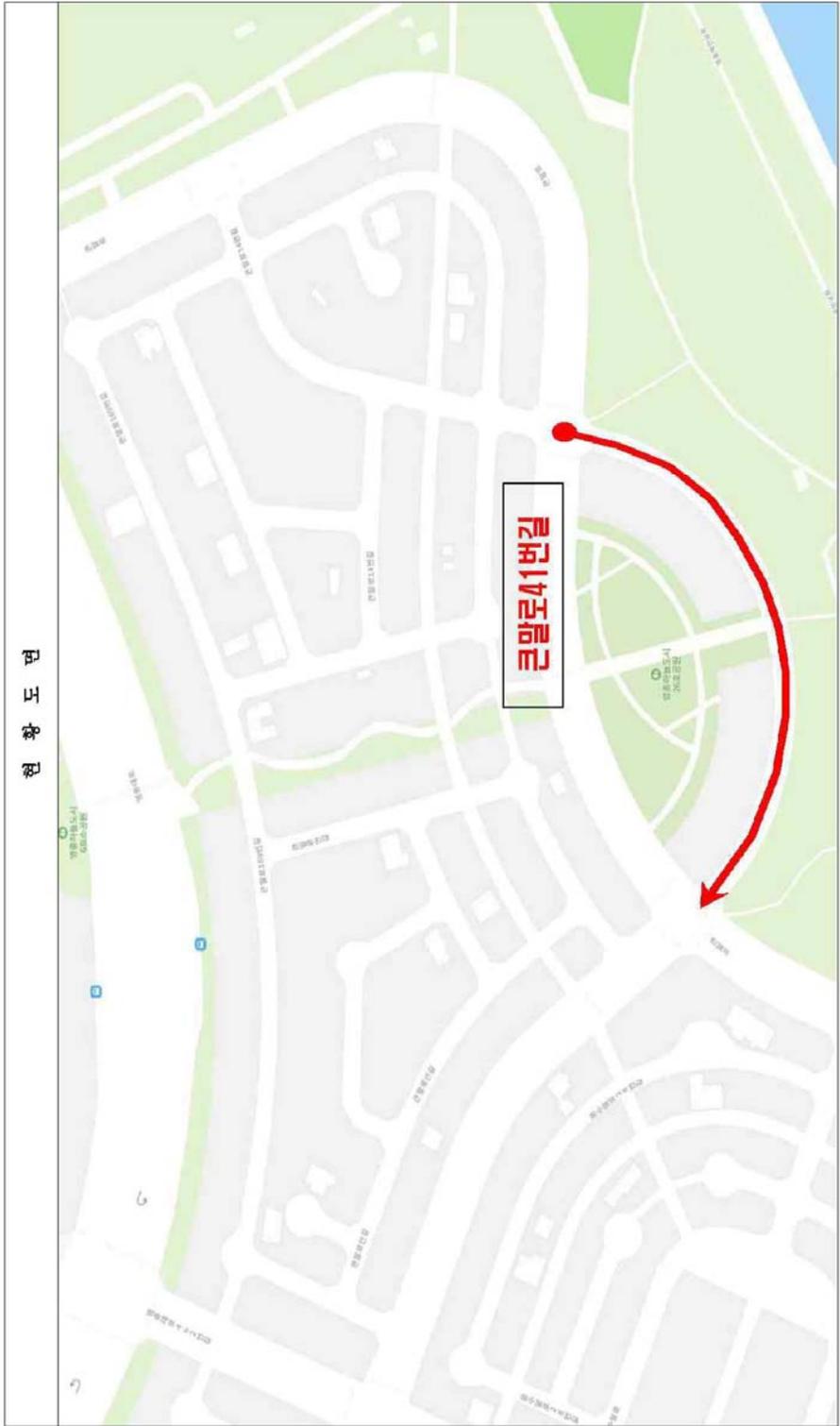
10.11. 용수말로4번길, 용수말로60번길

구분	도로구분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현황
			시점	종점				시작	끝		
신규	길	용수말로4번길	운남동 1637-19	운남동 1633-14	220	8	20	1	22	용수말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영종동
신규	길	용수말로60번길	운남동 1615-19	운남동 1614-31	256	8	20	1	26	용수말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6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영종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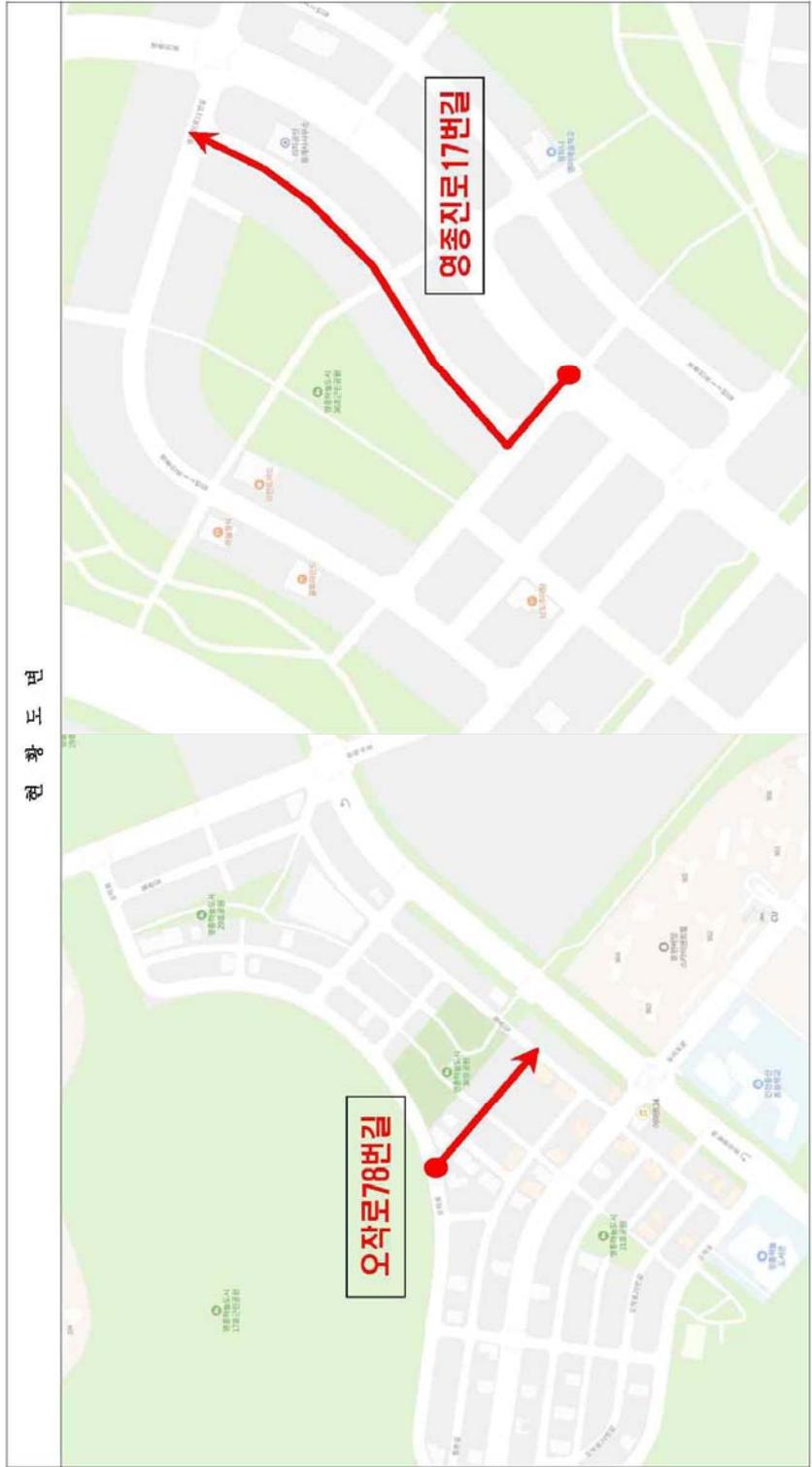
12. 큰말로41번길

구분	도로구분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활용 종류
		시점	종점				시작	끝		
신규	예비도로명 큰말로41번길	운남동 1631-10	운남동 1631-10	258	8	20	1	26	큰말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10m 지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영종동



10.11. 용수말로4번길, 용수말로60번길

구분	도로구분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할양 구역
			시점	종점				시작	끝		
신규	길	오작로78번길	중산동 1911-7	중산동 1911-7	140	6	20	1	14	오작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7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영종1동
신규	길	영종진로17번길	중산동 1928-15	중산동 1930-11	246	6	20	1	26	영종진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영종1동



도로명[구간] 부여 의견서				
성명 및 단체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연번 및 도로구간 예비도로명(안)	연번		도로구간 예비도로명(안)	
신청(의견) 구간/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예비도로명 부여의견				
<p>예비도로명/구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p>				
<p>※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도 가능합니다.</p>				

